

-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의안번호 : 제214호
- 다. 제출일자 : 2018. 10. 17.
- 라. 회부일자 : 2018. 10. 29.

2. 제안사유

- 가. 상위법인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(이하 “법”)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면서 선의의 운송사업자와 위·수탁차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
- 나. 법의 조문과 달리 현행 조례의 조문은 행정처분이 있을 시에만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, 문구 수정을 통하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

3. 주요내용

- 가.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(변경)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(변경)허가를 받아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’를 추가로 신설(안

제3조제9호, 제4조 관련 별표 1)

- 나. 신고 또는 고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없을 때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규정 문구를 수정
(안 제3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

다. 입법예고

○ 예고기간 : 2018.8.2.~8.22.

○ 제출의견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행정처분이 없을 때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조문을 수정하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
- 현행 조례는¹⁾ 행정처분 절차가 확정된 이후에 한해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반면, 관련 법은²⁾ 신고 또는 고발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 절차가 확정된 이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,

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조문을 수정하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문 해석에 대한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임

1) 제3조(포상금 지급대상) 서울특별시장(이하"시장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는 이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위반행위자가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을 넘기거나,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.

2)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60조의2(신고포상금 지급 등) ①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·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-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이 개정됨에³⁾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

현행 조례에서 운영 중인 위반행위 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을 통해 화물운송시장 질서교란 행위를 근절하며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

또한, 동 개정조례안 별표에서 규정한 포상금은 관련 법에서 서울시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에⁴⁾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, 현행 조례에서 운영 중인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 및 포상금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이라고 할 것임

3)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60조의2(신고포상금 지급 등) ①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·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8.3.20.>

4.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

4)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60조의2(신고포상금 지급 등)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